



제428회국회(임시회)
제1차 정무위원회

갈등관리 및 공론화에 관한 법률안

검 토 보 고

〈공공정책 갈등관리 및 공론화를 위한 일반법 제정〉

■ 김문수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9530호)

2025. 8.

정 무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정명호

목 차

I. 제안경위	1
II. 제안이유	1
III. 주요내용	1
IV. 검토의견	4
1. 개요 및 입법 필요성	4
2. 주요 내용별 검토	9
가. 목적 및 다른 법률과의 관계 등	9
나. 종합시책 수립 및 갈등관리심의위원회·갈등조정협의회 설치	11
다. 공론화대상선정위원회 및 공론화위원회	16
라. 갈등 예방·해결을 위한 지원체계	26

I. 제안경위

1. 제 안 자 : 김문수의원 등 11인
2. 제 안 일 : 2025. 4. 1.
3. 회 부 일 : 2025. 4. 2.

II. 제안이유

사회구조가 변화하고 가치, 이해관계가 다원화됨에 따라 공공정책의 추진과정에서 다양한 형태의 갈등이 분출되고 있음.

이에 중앙행정기관의 갈등을 예방하고 해결하기 위한 역할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중앙행정기관의 갈등관리 능력을 향상시키고, 사회변화에 부합하는 참여적 의사결정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III. 주요내용

가. 갈등 예방과 해결의 원칙(안 제4조부터 제7조까지)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공공정책을 수립·추진할 때 이해관계인의 신뢰를 확보하도록 하고, 이해관계인 등의 실질적인 참여가 보장되도록 하며, 공공정책을 통하여 달성하려는 공익과 이에 상충되는 다른 공익 또는 사익을 비교·형량하도록 하고, 공공정책 관련 정보를

공개하고 공유하도록 하는 등 갈등 예방과 해결의 원칙을 규정함.

나. 갈등관리 종합시책의 수립(안 제8조)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갈등의 예방과 해결 능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갈등관리가 필요한 공공정책의 선정 및 관리 계획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된 갈등관리 종합시책을 매년 수립·추진하도록 함.

다. 갈등관리심의위원회의 설치·운영(안 제9조부터 제11조까지)

1) 소관 사무에 대한 갈등의 예방과 해결에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에 갈등관리심의위원회를 설치하되, 조정·지원 등 업무를 담당하는 중앙행정기관은 갈등관리심의위원회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함.

2) 갈등관리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전체 위원의 과반수가 되도록 함.

3) 갈등관리심의위원회 위원이 중립적이고 공정한 입장에서 활동하도록 함.

4)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갈등관리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갈등의 예방과 해결 과정에 성실히 반영하도록 함.

라. 공론화대상선정위원회의 설치·운영(안 제15조부터 제21조까지)

1) 공론화 대상 의제를 선정하고, 공론화 제도를 공정하고 체계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공론화대상선정위원회를 둠.

2) 공론화대상선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하고, 공론화대상선정위원회 위원은 공무원이 아닌 사람 중에서 국무총리가 위촉하도록 하며, 공론화대상선정위원회 위원장은 공론화대상선정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함.

3) 공론화대상선정위원회 위원이 안건이 본인이나 친족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등에는 그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되거나 스스로 회피하도록 함.

마. 공론화위원회의 설치·운영(안 제23조부터 제26조까지)

1) 공론화를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하여 공론화대상선정위원회에서 공론화 실시 대상으로 의결된 의제별로 공론화위원회를 둠.

2) 공론화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6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하고, 공론화위원회 위원장은 공론화대상선정위원회 위원 중에서 공론화대상선정위원회 위원장이 위촉하도록 하며, 공론화위원회 위원장이 아닌 위원은 공무원이 아닌 사람 중에서 공론화대상선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공론화위원회 위원장이 위촉하도록 함.

3) 공론화위원회의 운영기간은 6개월의 범위에서 공론화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공론화위원회 위원장이 정하되, 공론화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6개월의 범위에서 1회 연장할 수 있도록 함.

IV. 검토의견

1. 개요 및 입법 필요성

□ 제정안은 각 중앙행정기관에 갈등관리심의위원회 및 갈등조정협의회를 설치하고, 국무총리 소속으로 공론화대상선정위원회 및 공론화위원회를 두며, 국무조정실이 갈등관리를 위한 각종 지원을 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① 직접적인 갈등해결 주체인 ‘중앙행정기관’, ② 사회적 합의를 도모하기 위한 기구로서 ‘공론화대상선정위원회 및 공론화위원회’, ③ 갈등관리를 총괄·지원하는 ‘국무조정실’을 주체로 하여, 갈등관리의 전반적인 체계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보임.

<제정안의 주요내용>

구 분	주 요 내 용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총칙규정】 ◦ 중앙행정기관의 갈등 예방·해결 능력 향상을 목적으로 하며, “갈등” 및 “공론화”를 정의함. ◦ 이 법은 갈등의 예방·해결 관련 일반법임.
제4조(자율 해결과 신뢰 확보) 제5조(참여 보장) 제6조(이익의 비교·형량) 제7조(정보 공개 및 공유)	【갈등 예방 및 해결의 원칙】 ◦ 공공정책 수립·추진 시 ① 이해관계인 신뢰확보, ② 국민의 실질적 참여 보장, ③ 공익 및 사익의 비교·형량, ④ 관련 정보 공개 필요
제8조(갈등관리 종합시책) 제9조(갈등관리심의위원회의 설치) 제10조(갈등관리심의위원회의 기능)	【갈등관리 종합시책 및 갈등관리심의위원회 등】 ◦ 중앙행정기관에 갈등관리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갈등관리 종합시책을 매년 수립

구 분	주 요 내 용
제11조(심의 결과의 반영) 제12조(갈등조정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제13조(협의 과정의 비공개 원칙) 제14조(비밀유지)	◦ 중앙행정기관장은 필요하면 사안별로 갈등조정협의회 구성할 수 있고, 협의 과정은 비공개 원칙
제15조(공론화대상선정위원회 설치) 제16조(선정위원회의 기능) 제17조(선정위원회의 구성) 제18조(선정위원회의 운영) 제19조(선정위원의 결격사유) 제20조(선정위원의 신분보장) 제21조(선정위원의 제척·회피) 제22조(공론화 의제의 제안 등) 제23조(공론화위원회의 설치) 제24조(공론화위원회의 기능) 제25조(공론화위원회의 구성 등) 제26조(공론화위원회의 운영) 제27조(여론조사) 제28조(휴대전화 가상번호의 제공) 제29조(공론화 결과의 발표)	【공론화대상선정위원회 및 공론화위원회】 ◦ 공론화 대상 의제 선정을 위해 국무총리 소속으로 공론화대상선정위원회 설치 ◦ 국회, 중앙행정기관장 및 지방자치단체장이 선정위원회에 공론화 의제 제안 ◦ 선정위원회는 공론화 의제를 제안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공론화 여부 심의·의결 ◦ 공론화 실시 대상으로 의결된 의제별로 선정위원회에 공론화위원회 설치 ◦ 공론화 의제에 대한 국민 의견 수렴을 위해 공론화위원회가 여론조사 실시 가능 ◦ 공론화 관련 정책 소관 중앙행정기관장은 공론화 위원회의 공론화 결과 발표 후 30일 이내에 이를 고려한 공공정책 추진 방침 발표
제30조(갈등관리지원센터의 지정) 제31조(갈등관리지침서 작성 및 활용) 제32조(갈등관리 실태 점검·보고 등) 제33조(갈등관리정책협의회) 제34조(포상) 제35조(정보화시스템) 제36조(재정지원 등)	【갈등의 예방과 해결을 위한 지원체계 구축】 ◦ 국무조정실장은 ① 전문기관 중 갈등관리지원센터를 지정하고, ② 갈등관리지침서를 중앙행정기관장에 통보하며, ③ 중앙행정기관의 갈등관리 실태를 점검하도록 하고, ④ 부처간 협의를 위해 갈등관리정책협의회를 설치하며, ⑤ 정보화시스템을 구축함.
제37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제38조(벌칙)	【보칙 및 벌칙】 ◦ 민간위원의 공무원 의제와 휴대전화 가상번호 부정사용 등에 관한 벌칙 규정

□ 갈등관리 및 공론화 관련 법률안은 제17대 국회인 2005년부터 제21대 국회까지 지속적으로 제출¹⁾되었으나 각각 임기만료 폐기되어, 현재 관련 법률이 없는 상황이며,

정부는 2007년 제정된 대통령령인 「공공기관의 갈등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에 근거해 갈등관리 정책을 시행하고 있음.

□ 제정안은 대통령령인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을 수정·보완하여 법률로 상향 규정하려는 것으로,

법적 구속력 강화를 통해 갈등관리제도의 규범력을 강화하여 관련 기관이 갈등관리에 적극 대응하도록 함으로써 중앙행정기관의 갈등관리 능력을 향상하고, 대화와 타협을 통해 갈등을 원만히 해결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취지로 보임.

1) 제17대국회 1건(정부안), 제18대국회 2건(의원발의), 제19대국회 3건(의원발의), 제20대국회 8건(의원발의), 제21대국회 5건(의원발의4, 정부안1)

<현행 대통령령과 제정안 비교>

구 분		공공기관갈등예방규정(대통령령)	제정안
대상		중앙행정기관 *지자체, 공공기관은 재량	중앙행정기관
갈등 예방 및 해결 원칙		① 자율해결과 신뢰확보 ② 참여와 절차적 정의 ③ 이익의 비교형량 ④ 정보공개 및 공유 ⑤ 지속가능한 발전의 고려	① 자율해결과 신뢰확보 ② 참여와 절차적 정의 ③ 이익의 비교형량 ④ 정보공개 및 공유
중앙 행정 기관	갈등관리 종합시책	중앙행정기관이 종합적 시책 수립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매년 수립
	갈등관리 심의위원회	중앙행정기관 의무설치	좌동
	갈등조정 협의회	필요 시 설치	좌동
		비공개 원칙, 합의 시 공개 가능	좌동
공론화대상선정 위원회 및 공론화위원회		-	국무총리 소속으로 공론화대상선정위원회를 두고, 공론화 의제별로 공론화위원회 설치
국무 조정실	연구기관	갈등관리 연구기관 지정·지원	좌동(명칭만 변경)
	매뉴얼	갈등관리매뉴얼(국무조정실)	좌동(명칭만 변경)
	실태점검	국무조정실 실태점검·평가 국무조정실 갈등관리정책협의회 설치	좌동(명칭만 변경)

□ 현재 공공정책과 관련된 갈등의 예방 및 해결을 위한 제도들이 「행정절차법」²⁾, 「환경영향평가법」³⁾, 「방사성폐기물 관리법」⁴⁾,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⁵⁾ 등에 개별적으로 규정되어 있지만, 갈등관리 관련 일반법은 마련되어 있지 않음.

□ ① 사회구조가 복잡해지면서 이해관계가 다원화되어 이해당사자 간 갈등에 따른 사회적 비용이 적지 않고, ② 갈등관리에 관한 사항을 법률마다 개별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상황이므로, 갈등관리를 위한 일반법을 마련하려는 제정안의 입법 방향은 바람직해 보임.

2) 「행정절차법」 제22조(의견청취) ② 행정청이 처분을 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청회를 개최한다.

1. 다른 법령등에서 공청회를 개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
2. 해당 처분의 영향이 광범위하여 널리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다고 행정청이 인정하는 경우
3. 국민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처분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처분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당사자등이 공청회 개최를 요구하는 경우

3) 「환경영향평가법」 제13조(주민 등의 의견 수렴) ① 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은 개발기본계획에 대한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공고·공람하고 설명회를 개최하여 해당 평가 대상지역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의 주민이 공청회의 개최를 요구하면 공청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4)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제6조의2(공론화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기본계획 수립과정에서 사용후 핵연료 관리 등 사회적 갈등이 예상되는 사항에 대하여 이해관계인·일반시민 또는 전문가 등으로부터 광범위한 의견수렴 절차(이하 이 조에서 "공론화"라 한다)를 거칠 수 있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공론화를 위하여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공론화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의 기능 및 활동기한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한다.

5)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8조(공론화 등) ① 위원회는 기본계획의 수립,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등의 과정에서 사회적 갈등이 예상되는 사항에 대하여 이해관계인·전문가 또는 일반시민 등으로부터 광범위한 의견수렴 절차(이하 이 조에서 "공론화"라 한다)를 거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공론화를 위하여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공론화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공론화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론화위원회의 기능 및 활동기한은 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

2. 주요 내용별 검토

가. 목적 및 다른 법률과의 관계 등

- 제정안은 갈등 예방 및 해결을 위한 원칙으로 정하는 한편, 갈등 예방·해결과 관련해 동 제정안이 일반법 기능을 하게 됨을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1조부터 제7조까지).

제 정 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중앙행정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역할 및 절차 등을 규정하여 중앙행정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 능력을 향상시킴으로써 사회통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갈등”이란 중앙행정기관이 공공정책(법령의 제정·개정 및 각종 사업계획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수립하거나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해관계의 충돌을 말한다. 2. “공론화”란 갈등이 예상되거나 발생한 공공정책에 대하여 국민과 이해관계인 등이 참여하여 숙의(熟議)하는 과정을 말한다.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갈등의 예방과 해결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갈등 예방 및 해결의 원칙 제4조(자율 해결과 신뢰 확보)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공공정책을 수립·추진할 때 이해관계인의 신뢰를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이해관계인은 대화와 타협을 통하여 갈등을 자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참여 보장)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공공정책을 수립·추진할 때 이해관계인·국민·전문가 등의 실질적인 참여가 보장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이익의 비교·형량)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공공정책을 수립·추진할 때 달성하

제 정 안
려는 공익과 이에 상충되는 다른 공익 또는 사익을 비교·형량(衡量)하여야 한다. 제7조(정보 공개 및 공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민이 공공정책의 취지와 내용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공개하고 공유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정안은 갈등 예방 및 해결의 원칙으로서 대화와 타협을 통한 자율해결, 이해관계인 등 국민의 참여 보장, 공익과 사익의 비교·형량, 정보의 공개 등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현행 대통령령과 유사한 내용으로서 별다른 문제점은 없어 보임.

□ 다만, 제정안은 갈등 예방·해결의 주체로서 중앙행정기관을 규정하고, 이 법의 적용범위를 ‘중앙행정기관’의 공공정책 수립·추진과 관련된 이해관계 충돌로 한정하고 있는데,⁶⁾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의 사업(입지선정 등) 등도 공공갈등이 빈번히 발생하는 영역이므로, 이 법의 적용대상에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을 추가하는 안을 논의해 볼 필요성이 있어 보임.

6) 참고로, 「공공기관의 갈등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경우 갈등관리제도 운영을 재량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규정함.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제3조(적용대상) ①이 영은 중앙행정기관(총리령으로 정하는 대통령 소속기관 및 국무총리 소속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적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기관은 이 영과 동일한 취지의 갈등관리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나. 종합시책 수립 및 갈등관리심의위원회·갈등조정협의회 설치

- 제정안은 ① 중앙행정기관장이 갈등 예방·해결능력 강화를 위해 갈등관리 종합시책을 매년 수립·추진하도록 하고, ② 갈등관리 관련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갈등관리심의위원회를 설치하며, ③ 필요한 경우 사안별로 갈등조정협의회를 둘 수 있게 하려는 것임(안 제8조부터 제14조까지).

제 정 안
제3장 갈등관리 종합시책 및 갈등관리심의위원회 등 제8조(갈등관리 종합시책)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갈등의 예방과 해결 능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갈등관리 종합시책을 매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갈등관리 종합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제9조제1항에 따른 갈등관리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계획 2. 제12조제1항에 따른 갈등조정협의회 구성 및 운영 계획 3. 갈등관리가 필요한 공공정책의 선정 및 관리 계획 4. 갈등의 예방과 해결 능력 향상을 위한 소속 직원 교육훈련 계획 5. 갈등관리 실적·역량에 따른 소속 직원 포상 등 지원 계획 6. 그 밖에 갈등의 예방과 해결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갈등관리심의위원회의 설치 등) ① 소관 사무에 대한 갈등의 예방과 해결에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에 갈등관리심의위원회를 설치한다. 다만, 조정·지원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중앙행정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은 갈등관리심의위원회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갈등관리심의위원회(이하 “갈등관리심의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속 직원 또는 갈등의 예방과 해결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공무원(「고등교육법」에 따른 국립·공립 학교의 교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 제17조제2항 및 제

제 정 안

25조제3항에서 같다)이 아닌 위원이 전체 위원의 과반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④ 갈등관리심의위원회 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⑤ 갈등관리심의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⑥ 갈등관리심의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갈등관리심의위원회 위원은 중립적이고 공정한 입장에서 활동하여야 한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갈등관리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갈등관리심의위원회 위원장이 정한다.

제10조(갈등관리심의위원회의 기능 등) ① 갈등관리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8조제1항에 따른 갈등관리 종합시책의 수립·추진에 관한 사항
2. 제36조에 따른 갈등의 예방과 해결에 관한 민간 활동의 지원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갈등의 예방과 해결에 관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② 제9조제1항 단서에 따라 갈등관리심의위원회를 설치하지 아니한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필요한 경우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관계 전문가에게 자문할 수 있다.

제11조(심의 결과의 반영)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갈등관리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갈등의 예방과 해결 과정에 성실히 반영하여야 한다.

제12조(갈등조정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공공정책으로 발생한 갈등을 해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사안별로 갈등조정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갈등조정협의회(이하 “갈등조정협의회”라 한다)는 의장 1명, 해당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및 이해관계인 등으로 구성한다.

③ 갈등조정협의회 구성원은 상호 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공동의 이익이 되는 대안을 창출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 한다.

④ 갈등조정협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갈등조정협의회의 구성원이 협의하여 정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갈등조정협의회의 활동 범위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조(협의 과정의 비공개 원칙) 갈등조정협의회의 협의 과정은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갈등조정협의회의 의결을 통해 공개할 수 있다.

제 정 안
제14조(비밀 유지) 갈등조정협의회 구성원은 갈등조정협의회의 협의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타인에게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 갈등관리심의위원회는 현재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에 설치된 위원회로서, 갈등관리 종합시책의 수립·추진 등의 역할을 수행함.

2024년 기준 총 45개 중앙행정기관에 갈등관리심의위원회가 설치·운영되고 있는데⁷⁾, 제정안에서는 부칙⁸⁾을 통해 기존 갈등관리심의위원회를 제정안 제9조제1항에 따라 설치된 갈등관리심의위원회로 보아 기존 제도와 연계성을 유지하고 있음.

□ 갈등조정협의회 역시 현재 운영 중인데⁹⁾, 중앙행정기관장의 판단에 따라 사안별로 구성되어, 공무원 및 이해관계자 등의 대화와 타협, 참여를 통해 갈등을 해결하는 제도임.

제정안은 갈등관리심의위원회와 같이 부칙 규정을 통해 기존 갈

7) 갈등관리심의위원회 현황은 참고자료 1 참조

8) 제정안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갈등관리심의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중앙행정기관에 설치되어 운영 중인 갈등관리심의위원회는 제9조제1항에 따라 설치된 갈등관리심의위원회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중앙행정기관에 설치되어 운영 중인 갈등관리심의위원회 위원은 제9조제3항에 따라 임명되거나 위촉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이 법 시행 전에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위촉된 날부터 기산한다.

제3조(갈등조정협의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중앙행정기관에 구성되어 운영 중인 갈등조정협의회는 제12조에 따라 구성된 갈등조정협의회로 본다.

9) 갈등조정협의회 현황은 참고자료 2 참조

등조정협의회를 제정안에 따른 협의회로 간주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제정안에 따른 갈등관리심의위원회 및 갈등조정협의회 >

구분	갈등관리심의위원회	갈등조정협의회
설치	중앙행정기관 의무설치 *대통령령으로 예외 규정	중앙행정기관에 필요 시 설치
구성	위원장 포함 15인 이내(임기 2년), 민간위원 과반수, 위원장 민간위원 중 호선	의장 1인,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이해관계인
기능	① 종합시책 수립 ② 민간활동 지원 등	이미 발생한 갈등의 해결 (사후적 해결수단)
기타	정당한 사유 외 성실히 반영	비공개 원칙, 비밀누설금지

☐ 제정안은 원활한 갈등관리를 위해 중앙행정기관에 갈등관리심의위원회와 갈등조정협의회를 설치하려는 것으로, 그 입법취지는 타당해 보임.

☐ 다만, 다음 사항에 대하여는 추가 검토가 필요해 보임.

○ 첫째, 제정안은 중앙행정기관의 갈등관리 종합시책 수립 및 민간활동지원을 위해 각 중앙행정기관마다 갈등관리심의위원회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동 위원회는 위원회의 결정이 관계 행정기관을 구속하지 않는 자문 위원회로 보이며, 자문위원회의 경우에는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설치 관련 일반법인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설치 운영에 관한 법률」¹⁰⁾에 따라 설치하는 것이 용이하므로, 입법경제적 측면을 고려

해 별도로 규정할 필요성이 있는지 논의해 보아야 할 것임.

- 둘째, 제정안 제37조¹¹⁾에서는 공론화대상선정위원회 및 공론화위원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¹²⁾를 적용할 때 공무원으로 보아 참여자의 비밀유지, 뇌물수수 금지 등을 강화하였으나, 갈등조정협의회 구성원에 대하여는 해당 규정을 적용하고 있지 않음.

갈등조정협의회 역시 갈등 예방·해결을 위한 협의체인 만큼, 협의 과정에서 참여자의 비밀누설이나 뇌물수수를 억제할 필요성이 있으므로, 갈등조정협의회 위원 역시 공무원 의제 조항의 대상에 포함할 필요성이 있어 보임.

10)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위원회 운영의 민주성·투명성·효율성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1) 제정안 제37조(별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선정위원회 및 공론화위원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12) 「형법」 제127조(공무상 비밀의 누설)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을 누설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제129조(수뢰, 사전수뢰) ①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②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될 자가 그 담당할 직무에 관하여 청탁을 받고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한 후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제130조(제삼자뇌물제공)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그 직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제3자에게 뇌물을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를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제131조(수뢰후부정처사, 사후수뢰) ①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전2조의 죄를 범하여 부정한 행위를 한 때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그 직무상 부정한 행위를 한 후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제삼자에게 이를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를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③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었던 자가 그 재직 중에 청탁을 받고 직무상 부정한 행위를 한 후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④ 전3항의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할 수 있다.

제132조(알선수뢰) 공무원이 그 지위를 이용하여 다른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다. 공론화대상선정위원회 및 공론화위원회

□ 제정안은 ① 공론화 대상 의제를 선정하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으로 공론화대상선정위원회를 설치하고, ② 공정하고 효율적인 공론화 과정을 위해 공론화 의제별로 공론화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게 하며, ③ 공론화 의제에 대한 국민 의견 수렴을 위해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활용한 여론조사를 실시할 수 있게 하려는 것임(안 제15조부터 제29조까지 등).

제 정 안
제4장 공론화대상선정위원회 및 공론화위원회 제15조(공론화대상선정위원회의 설치) 공론화 대상 의제(議題)를 선정하고, 공론화 제도를 공정하고 체계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공론화대상선정위원회(이하 “선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6조(선정위원회의 기능) 선정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제22조제1항에 따라 제안된 의제의 공론화 실시 여부 2. 제25조에 따른 공론화위원회의 구성 3. 공론화와 관련한 제도 개선 방안 4. 그 밖에 공론화 제도와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17조(선정위원회의 구성) ① 선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선정위원회 위원(이하 “선정위원”이라 한다)은 공무원이 아닌 사람으로서 갈등관리 및 공론화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선정위원회의 업무를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중에서 국무총리가 위촉한다. ③ 선정위원회 위원장(이하 “선정위원장”이라 한다)은 선정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선정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선정위원회의 구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8조(선정위원회의 운영) ① 선정위원장은 선정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제 정 안

② 선정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1. 제22조제1항에 따른 공론화 제안이 있는 경우
2. 재적위원 과반수가 요구하는 경우
3. 선정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선정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선정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선정위원회가 미리 정한 위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선정위원은 공정하고 중립적인 입장에서 활동하여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선정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선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선정위원장이 정한다.

제19조(선정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선정위원이 될 수 없다.

1. 「공직선거법」에 따라 실시하는 선거에 후보자로 등록한 사람
2.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3. 「정당법」 제22조에 따른 당원

제20조(선정위원의 신분보장) 선정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해촉(解囑)되지 아니한다.

1.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2.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4. 제19조 각 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제21조(선정위원의 제척·회피) ① 선정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해당 안건이 선정위원 본인이나 친족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2. 선정위원이 해당 안건과 관련하여 증언·감정을 하거나 자문·용역 등을 한 경우
3. 선정위원이나 선정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선정위원은 제1항 각 호의 제척사유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거나 그 밖에 심의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어렵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

제 정 안

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제22조(공론화 의제의 제안 등) ① 국회,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공정책으로 인한 갈등의 예방과 해결을 위하여 선정위원회에 공론화 의제를 제안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해당 공공정책을 소관하는 경우로 한정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공공정책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② 선정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제안을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공론화 여부를 심의·의결하여야 한다.

③ 선정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공론화 여부를 심의·의결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공정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1. 제1항에 따른 공론화 의제 제안권이 있는 자인지 여부
2. 공공성
3. 이해관계인에게 미치는 영향력의 범위 및 정도
4. 정부의 중장기 재정부담 수준
5. 국가의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여러 분야 발전에 미치는 영향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론화 의제의 제안 요건·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3조(공론화위원회의 설치) 공론화를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하여 선정위원회에서 공론화 실시 대상으로 의결된 의제별로 선정위원회에 공론화위원회를 설치한다.

제24조(공론화위원회의 기능) 제23조에 따른 공론화위원회(이하 “공론화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공론화 진행방식의 결정·추진에 관한 사항
2. 공론화와 관련한 대국민 공개 및 홍보에 관한 사항
3. 공론화와 관련한 자료수집 및 조사·연구에 관한 사항
4. 공론화와 관련한 국민 여론수렴에 관한 사항
5. 공론화 결과의 종합·정리 및 권고안 마련에 관한 사항

제25조(공론화위원회의 구성 등) ① 공론화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6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공론화위원회 위원장(이하 “공론화위원장”이라 한다)은 선정위원 중에서 선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선정위원장이 위촉한다.

제 정 안

③ 공론화위원장이 아닌 공론화위원회 위원은 공무원이 아닌 사람으로서 해당 공론화 의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공론화위원회의 업무를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중에서 선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공론화위원장이 위촉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론화위원회의 구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6조(공론화위원회의 운영) ① 공론화위원회의 운영기간은 6개월의 범위에서 공론화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공론화위원장이 정한다. 다만, 공론화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6개월의 범위에서 1회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론화위원회의 운영, 공론화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신분보장·의무 및 제척·회피에 관하여는 제18조제3항·제4항 및 제19조부터 제21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선정위원회”는 “공론화위원회”로, “선정위원장”은 “공론화위원장”으로, “선정위원”은 “공론화위원회 위원”으로 본다.

제27조(여론조사) ① 공론화위원회는 공론화 의제에 관한 국민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여론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공론화위원회는 효율적인 여론조사를 위하여 여론조사 전문 기관이나 단체 등(이하 “여론조사기관·단체”라 한다)에 여론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제28조(여론조사를 위한 휴대전화 가상번호의 제공) ① 공론화위원회는 제27조에 따라 직접 또는 여론조사기관·단체에 의뢰하여 여론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공론화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이동통신사업자(이하 “이동통신사업자”라 한다)에게 이용자의 휴대전화번호가 노출되지 아니하도록 생성한 번호(이하 “휴대전화 가상번호”라 한다)를 제공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공론화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이동통신사업자에게 휴대전화 가상번호의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 여론조사 개시일 전 15일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휴대전화 가상번호 제공 요청서를 이동통신사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여론조사의 목적·내용 및 기간
2. 여론조사 대상 지역 및 대상자 수
3. 이동통신사업자별로 제공하여야 하는 성별·연령별·지역별 휴대전화 가상번호 수. 이 경우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휴대전화 가상번호의 총수는 제2호에 따른 대상자 수의 30배수를 초과할 수 없다.

제 정 안

4. 휴대전화 가상번호의 유효기간

5. 그 밖에 휴대전화 가상번호의 활용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제1항에 따라 요청을 받은 이동통신사업자는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휴대전화 가상번호 제공 요청서에 따라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생성하여 유효기간을 설정한 후 공론화위원회에 제공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이동통신사업자는 이용자 수의 부족 등으로 제공할 수 있는 휴대전화 가상번호의 수가 제공하여야 하는 휴대전화 가상번호의 수 보다 적은 때에는 지체 없이 공론화위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보를 받은 공론화위원장은 이동통신사업자가 제공하여야 하는 휴대전화 가상번호 수를 조정할 수 있다.

⑤ 이동통신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용자에게 여론수렴을 위하여 본인의 이동전화번호가 공론화위원회에 휴대전화 가상번호로 제공된다는 사실과 그 제공을 거부할 수 있다는 사실을 고지하여야 한다.

⑥ 이동통신사업자(그 대표자 및 구성원을 포함한다)는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제공할 때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휴대전화 가상번호에 유효기간을 설정하지 아니하고 제공하거나 여론조사 기간을 초과하는 유효기간을 설정하여 제공하는 행위

2. 요청받은 휴대전화 가상번호 수를 초과하여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제공하는 행위

3. 휴대전화 가상번호, 이용자의 성(性)·연령·거주지역 정보 외의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 이 경우 연령과 거주지역 정보의 범위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공론화위원회 외의 자에게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제공하는 행위

5. 제5항에 따른 고지를 받고 명시적으로 거부의를 밝힌 이용자의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제공하는 행위

6. 여론조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생성하여 제공하는 행위

⑦ 공론화위원회는 제27조제2항에 따라 여론조사기관·단체에 여론조사를 의뢰한 경우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제공받은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해당 여론조사기관·단체에 제공할 수 있다.

⑧ 제3항 및 제4항 또는 제7항에 따라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제공받은 공론화위원회(공론화위원회 위원을 포함한다) 또는 여론조사기관·단체(그 대표자 및 구성원을 포함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제공받은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제1항에 따른 여론조사를 실시하기 위한 목

제 정 안

적 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는 행위

2. 제공받은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타인에게 제공하는 행위

⑨ 제3항 및 제4항 또는 제7항에 따라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제공받은 공론화위원회(공론화위원회 위원을 포함한다) 또는 여론조사기관·단체(그 대표자 및 구성원을 포함한다)는 유효기간이 지난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즉시 폐기하여야 한다.

⑩ 이동통신사업자가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생성하여 제공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은 공론화위원회가 부담한다. 이 경우 이동통신사업자는 휴대전화 가상번호의 생성·제공에 소요되는 최소한의 비용을 청구하여야 한다.

⑪ 누구든지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제공한 이동통신사업자에게 여론조사의 결과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해서는 아니 된다.

⑫ 제1항부터 제11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휴대전화 가상번호 제공 요청의 방법과 절차, 휴대전화 가상번호 제공 요청서의 서식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9조(공론화 결과의 발표) ① 공론화위원회는 공론화 결과를 종합·정리하여 해당 공론화 의제에 대한 권고안을 마련하고, 공론화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지체 없이 공론화 결과 및 권고안을 발표하여야 한다.

② 공론화 의제와 관련된 공공정책을 소관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공론화 결과 발표 후 30일 이내에 공론화 결과를 고려한 공공정책 추진 방침을 발표하여야 한다.

③ 공론화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공론화 결과 및 권고안과 제2항에 따른 공공정책 추진 방침을 관보 또는 선정위원회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지체 없이 게시하여야 한다.

제6장 보칙

제37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선정위원회 및 공론화위원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7장 벌칙

제38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28조제6항제3호를 위반하여 휴대전화 가상번호, 이용자의 성·연령·거주지역 정보 외의 정보를 제공한 자

2. 제28조제6항제4호를 위반하여 해당 공론화위원회 외의 자에게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제공한 자

제 정 안

3. 제28조제6항제5호를 위반하여 명시적으로 거부 의사를 밝힌 이용자의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제공한 자
 4. 제28조제6항제6호를 위반하여 여론조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생성하여 제공한 자
 5. 제28조제8항제1호를 위반하여 제공받은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여론조사가 아닌 목적으로 사용한 자
 6. 제28조제8항제2호를 위반하여 제공받은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타인에게 제공한 자
 7. 제28조제9항을 위반하여 유효기간이 지난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즉시 폐기하지 아니한 자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28조제6항제1호를 위반하여 휴대전화 가상번호에 유효기간을 설정하지 아니하고 제공하거나 여론조사 기간을 초과하는 유효기간을 설정하여 제공한 자
 2. 제28조제6항제2호를 위반하여 요청받은 휴대전화 가상번호 수를 초과하여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제공한 자

1) 공론화대상선정위원회 및 공론화위원회 운영

☐ 제정안은 국무총리 소속으로 공론화대상선정위원회 및 공론화위원회를 설치하여,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공론화 과정을 진행하도록 함으로써 해당 정책소관 중앙행정기관에 이해관계자 등 국민의 의사를 전달하려는 취지로 이해됨.

또한, 제정안은 공론화대상선정위원회 위원에 대한 신분보장 규정을 포함하고 있는데, 이는 동 위원회가 독립적이고 중립적으로 활동할 수 있게 보장하려는 취지로 보임.

☐ 공론화대상선정위원회 및 공론화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아래와 같음.

< 제정안에 따른 공론화대상선정위원회 >

위원회 소속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
위원회 구성		위원장 1명 포함 11~15명(임기 2년, 공무원 의제), 전원 민간위원(국무총리 위촉), 위원장 호선
위원	결격사유	공직선거 후보자, 「국가공무원법」상 결격사유 해당자, 「정당법」에 따른 당원
	신분보장	예외: 금고 이상 선고, 심신장애로 직무수행 불가, 비위사실, 결격사유
	제척·회피	① 본인·친족과 직접적 이해관계 안건 ② 안건 관련 증언·감정, 자문·용역 ③ 위원 또는 소속 법인이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위원회 기능		① 제안된 의제의 공론화 실시 여부, ② 공론화위원회 구성 ③ 공론화 관련 제도 개선 등
공론화	의제 제안	국회, 중앙행정기관장, 지방자치단체장
	의제 선정	제안일부터 2개월 이내 공론화 여부 심의·의결
	선정 시 고려사항	① 제안 권한의 유무, ② 공공성, ③ 이해관계인 영향력 범위·정도 ④ 정부의 중장기 재정부담, ⑤ 국가의 정치·경제·사회·문화 발전 영향

< 제정안에 따른 공론화위원회 >

설치		공론화 대상으로 의결된 의제별로 선정위원회에 설치
구성		위원장 1명 포함 6~10명(공무원 의제), 전원 민간위원(선정위 의결로 공론화위원장 위촉), 위원장(선정위 의결로 선정위원장 위촉)
기능		① 공론화 진행방식 결정, ② 대국민 공개·홍보, ③ 자료수집 및 조사·연구, ④ 여론 수렴, ⑤ 공론화 결과 종합·정리, 권고안 마련
운영		운영기간은 6개월의 범위에서 위원회 의결로 위원장이 결정 (6개월 범위 내 연장 가능), 기타 운영사항은 선정위 규정 준용
여론조사	실시	전문 기관이나 단체에 여론조사 의뢰 가능
	휴대전화 가상번호	이동통신사업자에게 휴대전화의 가상번호 요청, 이동통신사업자는 이용자에게 가상번호 제공사실을 고지
공론화 결과		공론화 결과 및 권고안 발표, 중앙행정기관장은 30일 이내 공론화 결과를 고려한 공공정책 추진 방침 발표

- ☐ 참고로, 정부는 과거 대입제도 개편, 사용후 핵연료관리정책 등과 관련해 공론화위원회를 운영한 바 있음.

< 공론화를 통해 중앙정부의 정책방향을 설정한 사례 >

구분	사용후핵연료 공론화위원회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	2022학년도 대입제도 개편 공론화위원회	경인아라뱃길 공론화위원회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
운영 기간	'13.10.~'15.6.	'17.7~'17.10.	'18.4.~'18.8.	'18.10. ~'21.2.	'19.5~'21.2.
활동 결과	2만 7천여명의 의견 바탕 10개 권고사항 도출	신고리 5·6호기 건설 재개 등 권고안 도출	대학입시제도 개편 권고안 도출	주운기능 축소, 수질 개선, 문화관광 확대 등 권고사항 도출	사용후핵연료 정책 전반에 걸친 8개 정책 권고사항 도출
정책 반영 여부	제1차 고준위 방폐물 관리 기본계획수립 (‘16.7월), 고준위방폐물 관리법 국회 제출 (‘16.11월)	신고리 5·6호기 건설 재개 결정 (‘17.10월)	권고안 등 반영한 2022학년도 대학입학제도 및 고교교육 혁신방향 발표 (‘18.8월)	관계기관과 이행방안 논의	제2차 고준위 방폐물 관리 기본계획수립 (‘21.12월), 고준위 특별법 추진 및 제정 (‘25.3월)

(자료: 국무조정실)

- ☐ 제정안에 따라 공론화대상선정위원회 및 공론화위원회가 제도화될 경우, 공공 갈등을 유발할 수 있는 주요 사안에 대한 사회적인 합의형성시스템을 구축하여 정부에 의한 일방적인 정보제공이나 공청회 등을 통한 소극적 의견수렴을 넘어 국민이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임.

- ☐ 다만, 다음 사항에 대해서는 추가 검토가 필요해 보임.

- ☐ 첫째, 제정안은 공론화 방식 중 ‘여론조사’에 관한 사항만 규정(안 제 27조)하고 있는데, 이 경우 국민은 여론조사 방식으로만 공론화하는

것으로 오해할 수 있으므로, 공론화의 방식을 예시화¹³⁾ 하는 등 숙의 과정을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규정할 필요성이 있어 보임.

□ 둘째, 제정안은 공론화대상선정위원회 및 공론화위원회의 회의록 공개 등 의사 공개에 관한 사항은 규정하고 있지 않는데,

- ① 제정안에 따른 갈등관리의 기본원칙은 ‘정보의 공개와 공유’이고,
- ② 공론화대상선정위원회 및 공론화위원회에서 논의되는 ‘공론화 의제 선정’ 및 ‘공론화 방법 결정’ 등은 정책사업의 지연, 중앙행정기관의 정책결정권한 제약, 특정 집단의 사적 이익 침해, 정략적 이용 가능성 등과 관련되는 문제이므로 그 결정과정의 공정성이 매우 중요함. 따라서, 해당 위원회의 회의록 공개 등 의사 공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위원회 활동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할 필요성이 있어 보임.

2) 여론조사를 위한 휴대전화 가상번호 제공

□ 제정안은 공론화 의제에 관한 국민 의견 수렴을 위해 여론조사기관·단체에 여론조사를 의뢰할 수 있도록 하고, 여론조사 진행 과정에서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활용할 수 있게 하는 한편, 휴대전화 가상번호 제공 및 사용과 관련된 벌칙을 마련하려는 것임.

□ 휴대전화 가상번호¹⁴⁾를 활용하여 여론조사를 실시할 경우, 여론조사

13) 숙의토론, 시민배심원, 숙의 여론조사, 이해관계자 규제협상 등

14) 휴대전화 가상번호란 이용자의 휴대전화번호가 노출되지 아니하도록 생성한 번호를 의미

결과의 신뢰성을 제고¹⁵⁾할 수 있고, 개인의 휴대전화번호를 암호화한 가상의 번호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개인정보 노출을 최소화¹⁶⁾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임.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활용한 여론조사는 현재 「공직선거법」¹⁷⁾ 등에 규정되어 있으며, 제정안은 동법의 입법례를 따르고 있어 별다른 문제점은 없어 보임.

라. 갈등 예방·해결을 위한 지원체계

□ 제정안은 국무조정실장이 ① 갈등관리지원센터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② 갈등관리지침서를 작성해 중앙행정기관장에게 통보하며, ③ 중앙행정기관의 갈등관리실태를 점검하도록 하는 한편, ④ 정보화시스템 마련 등 갈등의 예방·해결을 위한 지원체계를 구축하려는 것임(안 제30조부터 제36조까지).

제 정 안
제5장 갈등의 예방과 해결을 위한 지원체계 구축 제30조(갈등관리지원센터의 지정) ① 국무조정실장은 갈등의 예방과 해결에 필요한 조사·연구 등의 지원업무를 전문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

15) 휴대전화 가상번호 도입 전에는 집전화 조사가 주를 이루어져, 젊은 층이나 이동이 잦은 인구의 표본 추출에 어려움이 있었음. 또한, 가상번호는 여론조사기관도 실제 전화번호를 알 수 없으므로 그 결과에 대한 조직적 개입이 어려움.

16) 가상번호는 실제 번호 노출 없이 여론조사가 가능하며, 일정 기간이 지나면 폐기되므로 재사용이 불가능함.

17) 「공직선거법」 제57조의8(당내경선 등을 위한 휴대전화 가상번호의 제공) ① 국회에 의석을 가진 정당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를 경유하여 이동통신사업자에게 이용자의 이동전화번호가 노출되지 아니하도록 생성한 번호(이하 “휴대전화 가상번호”라 한다)를 제공하여 줄 것을 서면(이하 “휴대전화 가상번호 제공 요청서”라 한다)으로 요청할 수 있다.

1. 제57조의2제1항에 따른 당내경선의 경선선거인이 되려는 사람을 모집하거나 당내경선을 위한 여론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2. 그 밖에 정당활동을 위하여 여론수렴이 필요한 경우

제 정 안

런 전문기관 중에서 갈등관리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지정할 수 있다.

②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갈등의 예방과 해결을 위한 정책·법령·제도·문화 등의 조사·연구
2. 제31조제1항에 따른 갈등관리지침서 및 교육훈련 프로그램의 개발·보급·지원
3. 갈등의 예방과 해결을 위한 관련 전문가 교육·양성
4. 그 밖에 갈등의 예방과 해결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

③ 국무조정실장은 지원센터의 운영 및 제2항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원센터의 지정 요건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1조(갈등관리지침서의 작성 및 활용) ① 국무조정실장은 갈등의 예방과 해결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양한 갈등해결 기법·사례 등을 포함한 갈등관리지침서를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갈등관리지침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갈등의 예방과 해결의 기본 원칙 및 절차
2. 갈등조정협의회의 실무 절차 및 사례
3. 참여적 의사결정 방법 등 다양한 갈등해결 기법 및 적용 사례
4. 분야별 갈등관리 방안
5. 그 밖에 갈등의 예방과 해결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각 중앙행정기관의 특성을 반영한 내용을 추가하는 등 제1항에 따른 갈등관리지침서를 보완할 수 있으며, 소관 공공정책을 수립·추진하는 경우 갈등관리지침서를 활용하여야 한다.

제32조(갈등관리 실태의 점검·보고 등) ① 국무조정실장은 중앙행정기관의 갈등관리 실태 등을 점검·평가하여야 한다.

② 국무조정실장은 제1항에 따른 점검·평가를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갈등관리 실태 등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자료 제출을 요청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국무조정실장은 제1항에 따른 점검·평가 결과를 국무회의에 보고 할 수 있다.

제 정 안

제33조(갈등관리정책협의회) ① 갈등관리에 대한 관계 부처 간 협의를 위하여 국무조정실에 갈등관리정책협의회를 설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갈등관리정책협의회(이하 “갈등관리정책협의회”라 한다) 위원장은 국무조정실장이 되고, 위원은 제9조제1항에 따라 갈등관리심의위원회를 설치한 중앙행정기관의 차관 또는 차관급 공무원이 된다. 이 경우 차관 또는 차관급 공무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갈등관리정책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4조(포상) 정부는 갈등의 예방과 해결에 공로가 현저한 자에게 포상을 할 수 있다.

제35조(정보화시스템) 국무조정실장은 갈등관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갈등의 예방과 해결 사례 및 갈등관리 절차·기법 등의 정보를 축적한 갈등관리정보화시스템을 구축하고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관련 기관·단체 등이 이를 활용하도록 할 수 있다.

제36조(재정지원 등) 중앙행정기관은 갈등관리에 필요한 조사·연구·교육훈련과 민간부문의 자발적인 갈등관리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재정지원 등을 할 수 있다.

□ 제정안은 갈등관리를 총괄·지원하는 국무조정실에 중앙행정기관의 갈등관리 실태점검 권한을 부여하고, 갈등관리의 효율화를 위해 정보화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하며, 관련 기관에 대한 재정지원의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갈등의 예방·해결을 위한 지원체계를 규정하려는 취지로서, 별다른 문제점은 없어 보임.

문 의 처

02)6788-5113

[참고자료 1] 갈등관리심의위원회 설치 및 개최 실적

부처명	설치연도	개최 현황				
		2020	2021	2022	2023	2024
기획재정부	2017년	4	4	4	4	4
교육부	2016년	4	3	3	3	3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13년	2	2	2	2	2
외교부	2020년	3	2	2	1	2
통일부	2017년	2	4	3	2	3
법무부	2014년	2	2	3	3	2
국방부	2010년	3	4	3	3	4
행정안전부	2007년	4	4	2	2	2
국가보훈부	2007년	4	5	4	4	5
문화체육관광부	2008년	3	3	2	2	2
농림축산식품부	2017년	3	1	3	3	2
산업통상자원부	2013년	2	2	2	2	2
보건복지부	2009년	2	1	2	2	2
환경부	2007년	4	3	2	4	3
고용노동부	2007년	2	2	2	2	3
여성가족부	2017년	1	2	1	2	2
국토교통부	2005년	4	4	1	1	1
해양수산부	2013년	1	3	2	3	3
중소벤처기업부	2011년	3	3	2	2	2
인사혁신처	2017년	2	2	2	3	2
식품의약품안전처	2015년	1	2	3	3	1
국세청	2017년	1	1	1	2	2
관세청	2005년	1	2	1	1	2
조달청	2008년	2	2	2	2	3
통계청	2019년	2	2	2	2	2
재외동포청	2024년	-	-	-	-	2
병무청	2007년	2	2	2	1	2
방위사업청	2018년	1	1	1	1	1
경찰청	2013년	1	2	2	2	1
소방청	2018년	2	1	2	1	0
국가유산청	2020년	2	2	2	3	1
농촌진흥청	2017년	1	2	1	1	1
산림청	2007년	1	3	2	1	2
특허청	2017년	2	1	2	2	2
질병관리청	2021년	-	2	2	3	2
기상청	2017년	1	2	1	1	2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2017년	3	3	3	3	3
새만금개발청	2017년	1	1	1	1	2
해양경찰청	2019년	2	2	2	2	2
방송통신위원회	2008년	2	4	4	4	4
공정거래위원회	2017년	1	1	1	1	1
국민권익위원회	2017년	2	4	4	3	3
금융위원회	2010년	4	1	2	3	2
개인정보위원회	2021년	-	2	2	2	3
원자력안전위원회	2020년	1	1	1	1	1

(자료: 국무조정실)

[참고자료 2] 갈등조정협의회 설치 및 개최 실적

부처명	구분	2020	2021	2022	2023	2024
기획재정부	협의회 수	4	3	5	6	7
	개최 실적	32	19	18	26	19
교육부	협의회 수	5	8	8	7	6
	개최 실적	13	43	30	20	41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협의회 수	10	4	8	4	3
	개최 실적	103	11	16	20	6*
외교부	협의회 수	1	1	2	2	1
	개최 실적	2	2	7	2	4
통일부	협의회 수	1	1	1	1	1
	개최 실적	8	10	7	5	2
법무부	협의회 수	-	-	2	2	5
	개최 실적	-	-	3	2	35
국방부	협의회 수	3	5	4	5	5
	개최 실적	13	28	20	16	22
행정안전부	협의회 수	2	1	3	2	4
	개최 실적	9	6	15	11	16
국가보훈부	협의회 수	1	1	1	4	3
	개최 실적	4	4	5	14	11
문화체육관광부	협의회 수	3	4	3	3	2
	개최 실적	12	16	8	10	15
농림축산식품부	협의회 수	3	4	6	3	3
	개최 실적	9	15	39	12	7
산업통상자원부	협의회 수	4	4	2	1	2
	개최 실적	31	16	2	3	4
보건복지부	협의회 수	4	10	8	9	10
	개최 실적	18	63	18	45	86
환경부	협의회 수	17	2	3	2	3
	개최 실적	95	8	23	6	8
고용노동부	협의회 수	11	9	11	10	9
	개최 실적	48	41	84	76	79
여성가족부	협의회 수	2	2	2	3	1
	개최 실적	9	5	5	5	6
국토교통부	협의회 수	4	3	6	3	1
	개최 실적	21	22	23	18	55
해양수산부	협의회 수	5	10	8	7	9
	개최 실적	23	31	28	19	21
중소벤처기업부	협의회 수	4	5	5	4	5
	개최 실적	71	51	71	58	72
인사혁신처	협의회 수	2	3	2	4	5
	개최 실적	3	8	4	4	9
식품의약품안전처	협의회 수	1	1	2	3	3
	개최 실적	3	8	10	13	8
국세청	협의회 수	2	1	2	2	3
	개최 실적	4	3	2	2	7

부처명	구분	2020	2021	2022	2023	2024
조달청	협의회 수	1	1	2	2	1
	개최 실적	1	2	7	2	0
방위사업청	협의회 수	1	1	1	1	1
	개최 실적	-*	-*	-*	-*	-*
경찰청	협의회 수	4	3	1	5	-
	개최 실적	18	11	4	10	-
소방청	협의회 수	-	1	-	-	2
	개최 실적	-	3	-	-	10
국가유산청	협의회 수	2	3	2	3	-
	개최 실적	4	7	4	4	-
농촌진흥청	협의회 수	1	1	2	2	2
	개최 실적	2	1	11	7	8
산림청	협의회 수	1	3	4	3	3
	개최 실적	8	9	18	11	18
특허청	협의회 수	2	2	1	2	5
	개최 실적	3	13	7	5	12
질병관리청	협의회 수	-	2	1	3	2
	개최 실적	-	53*	8	16	4
기상청	협의회 수	-	1	1	1	2
	개최 실적	-	1	1	1	2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협의회 수	1	4	1	3	9
	개최 실적	3	26	8	8	38
새만금개발청	협의회 수	1	1	1	2	2
	개최 실적	4	3	1	12	27
방송통신위원회	협의회 수	3	3	1	-	-
	개최 실적	18	12	8	-	-
공정거래위원회	협의회 수	-	-	2	2	2
	개최 실적	-	-	9	8	24
국민권익위원회	협의회 수	2	4	3	3	3
	개최 실적	24	15	17	26	27
금융위원회	협의회 수	2	2	3	3	5
	개최 실적	6	3	11	22	29
개인정보위원회	협의회 수	-	3	6	7	9
	개최 실적	-	3	28	28	61
원자력안전위원회	협의회 수	2	2	3	3	2
	개최 실적	7	43	30	22	35

* 수시 개최 실적은 제외(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위사업청, 질병관리청)

(자료: 국무조정실)